

제6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1. 10. 26.(수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의결 가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1호에 의거, 제2010-1차 전원회의(2010. 1. 14)에서 의결한 ‘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’에 해당됨
- 의결 나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2호에 의거, ‘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’에 해당됨

2] 의결사항

가.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- 한국방송공사
- (2011-60(서)-282)

-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의거, 위원회가 명한 ‘오작교 형제들’ 프로그램 제재조치 처분(’11. 10. 21)에 대한 한국방송공사의 원심 집행정지 신청(’11. 10. 21) 건에 대해, 원안대로 재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의결함

※ 원심 결정 내용 : 「방송심의에 관한 규정」 제44조(수용수준)제2항, 제46조(광고효과의 제한)제1항, 제51조(방송언어)제3항 등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 ‘오작교 형제들’ 프로그램에 대해 ‘시청자에 대한 사과’ 제재조치 처분

나. 대표자 및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

- (사)마포공동체라디오, (사)성서공동체에프엠 - (2011-60(서)-283)

- 대표자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(사)마포공동체라디오와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(사)성서공동체라디오에 대해 원안대로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- 위반내용 : (사)마포공동체라디오는 대표자 변경 후 90일, (사)성서공동체에프엠은 방송편성책임자 변경 후 95일이 경과한 후에 각각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대표자 및 방송편성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

- 처분내용 : 최초의 위반행위이고, 신생 방송국(’09.8.11. 방송국 허가)인 점, 행정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라디오방송국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「방송법」 제108조제1항제2호에 의거, (사)마포공동체라디오 및 (사)성서공동체에프엠에게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